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152
----------	-------

발의연월일 : 2025. 9. 22.

발 의 자 : 윤준병 · 송옥주 · 박용갑
이병진 · 문대림 · 임미애
임호선 · 박희승 · 김 윤
강준현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농업기계 구입 등에 따른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구입한 농업기계를 활용함으로써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기여하기 위함임.

그러나, 농업기계에 대한 보조금이 지원되면 일부 판매업체들은 농업기계 가격을 올려 일반 시장가격과 농업인들이 구입하는 실제 구매가격이 다른 이른바 ‘이중가격’이 형성되면서 보조금이 당초 지원하려는 농업인이 아닌 판매업체들의 폭리를 취하는 결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기계 이중가격 조성 또는 담합 등의 행위를 부당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 법 등에서의 지원 및 자격 제한을 명시하며, 부당행위 제조업자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지원이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기계 가격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제5조의2제2항, 제6조 신설 등).

주요내용

가.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금이 지원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을 인상하여 부당이익을 취하거나 담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을 원칙으로 명시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를 구입하려는 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기계의 시장가격과 실제 판매가격 및 수량, 농업기계 자금 지원 효과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자금 지원 규모를 산정하는 데에 활용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2항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금 지원의 여부에 따라 농업기계 가격이 상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상승률 이상으로 상승함에 따라 부당이익을 취했거나 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제조업자등에 대하여 지원 또는 자격을 제한함(안 제6조 신설).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행위로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하여 자금지원액의

2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신설).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농업기계화 촉진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국가나”를 “국가 및”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및 자금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등(이하 “제조업자 등”이라 한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금이 지원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을 인상하여 부당이익을 취하거나 담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2의 제목 “(실태조사)”를 “(실태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실태조사를”을 “조사를”로,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를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조업자등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

에”로, “실태조사의”를 “조사의”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를 구입하려는 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자금 지원 규모를 산정하는 데에 활용하여야 한다.

1. 농업기계의 시장가격, 실제 판매가격 및 수량

2. 농업기계 자금 지원 효과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부당행위에 대한 지원의 제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부당이익을 취했거나 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제조업자등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자금 지원을 통하여 구입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이 자금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구입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과 상이한 경우

2. 자금 지원에 따라 실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상승률의 범위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3. 농업기계의 판매가격이 담합에 의하여 형성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당행위로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의 제한 기준과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조에 따른 부당행위에 대한 지원의 제한

제16조의2 중 “제9조제1항·제3항에 따른 검정 또는 사후검정 등 이 법에 따른”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조에 따른 부당행위에 대한 지원의 제한
2. 제9조제1항·제3항에 따른 검정 또는 사후검정
3.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과징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행위로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하여 자금지원액의 2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농업기계화 촉진의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 사업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 -----.
<신 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및 자금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등(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금이 지원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을 인상하여 부당이익을 취하거나 담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2(실태조사) ① (생략)	제5조의2(실태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를 구입하려는 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하고 이를 자금 지원 규모를 산정하는 데에 활용하여야 한다.

1. 농업기계의 시장가격, 실제 판매가격 및 수량

2. 농업기계 자금 지원 효과

③ -----제1항 및 제2항에-----조사를-----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조업자등에게-----

-----.

④ 제1항 및 제2항에-----조사

-----.

제6조(부당행위에 대한 지원의 제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부당이익을 취했거나 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제조업자등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u>를」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u> <u>1. 자금 지원을 통하여 구입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이 자금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구입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과 상이한 경우</u> <u>2. 자금 지원에 따라 실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상승률의 범위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u> <u>3. 농업기계의 판매가격이 담합에 의하여 형성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당행위로 인정한 경우</u> <u>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의 제한 기준과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u>
제15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	제15조(청문) ----- ----- -----

여야 한다.

<신 설>

1. ~ 4. (생 략)

제16조의2(이의신청) 제9조제1항
· 제3항에 따른 검정 또는 사
후검정 등 이 법에 따른 처분
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1. 제6조에 따른 부당행위에 대
한 지원의 제한

2. ~ 5. (현행 제1호부터 제4
호까지와 같음)

제16조의2(이의신청)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

1. 제6조에 따른 부당행위에 대
한 지원의 제한

2. 제9조제1항·제3항에 따른
검정 또는 사후검정

3.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

제18조(과징금) ① 농림축산식품
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부당행위로 이익을 얻
은 자에 대하여 자금지원액의
2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
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

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
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
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
다.